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법률 18703호, 2022. 1. 4. 공포, 2022. 1. 4. 시행)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일부 서식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,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 중 “(해도를 포함한다)”를 “[해도(海圖)를 포함한다]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양여”를 “양여(讓與)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정관”을 “정관(定款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에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, “명시하여”를 “구체적으로 밝혀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3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(주소):

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·변경 제안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5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·변경 제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<u>(해도를 포함한다)</u>	8. ----- ----- -- <u>[해도(海圖)를 포함한다]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실시계획의 승인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9조(실시계획의 승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3. (생략)

4. 공공시설의 설치·이전·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조(해양치유지구 지원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·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(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)
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 양여(讓與)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해양치유지구 지원) ① --

----- 말한다. 이하 같다
-----.

② -----

----- 인정하는 -----

-----.

제12조(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)

① -----

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<u>정관</u>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양수산부의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. 제14조(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) ① ~ ③ (생략)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,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<u>명시하여</u>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⑤ (생략)	-----. 1. <u>정관(定款)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</u> ----- -----. 제14조(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누리집</u> ----- ----- ----- <u>구</u> <u>체적으로 밝혀</u> ----- --.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